

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#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#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

### 4. 주요내용

- 충청한우를 보호·육성하고,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충청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충청한우의 육성·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충청한우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을 명시함(안 제6조)
- 충청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혈통관리, 한우개량, 생산기반 확충, 품질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10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### 가. 제출배경

- 충북의 한우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농가 수는 5,689농가, 한우 마리 수는 225,449마리로, 특별시, 광역시, 세종,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8개 지역 중에서 농가 수는 7번째, 마리 수는 가장 적음
-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암소의 경우 충북의 보유 마릿수는 '21.11.17.기준 717마리로, 특별시, 광역시, 세종,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8지역 중에서 가장 적은 우량 암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
- 현재 충북에서는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하여 한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한우 마리 수, 우량 암소 보유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충북의 한우 현황을 고려할 때 도내 한우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 품질 제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

< 시도별 한우농가 및 한우두수 현황 >

지역	한우 사육 현황*				우량 암소 보유현황**	
	농가 수	전국 비중	두 수	전국 비중	두 수	등록한우 1000마리당 우량 암소 수
경기도	5,595	6.3%	246,338	7.7%	890	3.61%
강원도	6,602	7.4%	235,355	7.4%	856	3.63%
충청북도	5,689	6.4%	225,449	7.0%	717	3.18%
충청남도	11,396	12.8%	389,167	12.2%	923	2.37%
전라북도	9,003	10.1%	403,339	12.6%	1,513	3.75%
전라남도	16,395	18.4%	560,894	17.5%	1,425	2.54%
경상북도	19,264	21.6%	705,681	22.0%	2,460	3.49%
경상남도	10,971	12.3%	301,890	9.4%	2,690	8.91%
전국	89,138		3,203,940		11,961	

\* 출처 : 통계청(21년 3분기 기준) / \*\* 출처 : 한국종축개량협회(21. 11. 17.기준)

## 나. 주요 검토내용

### 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사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축산법」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, **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**
-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울 산 광 역 시	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12.05
경 기 도	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07.16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08.14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	2021.04.08
경 상 북 도	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10.31
경 상 남 도	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11.04

### 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는 충북한우를 보호·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**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**
- 안 제4조는 충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**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** 규정하는 것으로 충북한우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
- 안 제6조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**재정지원 사업을 명시함**
  - 「축산법」 제3조제2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 등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
-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<sup>1</sup>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유전적·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북 으뜸 한우가 육성되도록 혈통관리(안 제7조), 한우개량(안 제8조), 생산기반조성(안 제9조), 품질의 개선(안 제10조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11조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양관리,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**농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**
- 안 제13조는 **사후관리** 등으로 충북 한우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**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**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**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**,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, 적극적인 개량·증식사업을 통해 **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북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**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